

※ 접수 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업신청서			처리기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신청인	① 연금취급 기관 및 단위기관명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임용연월일			
	⑤ 연락처	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휴대전화			
신 청 내 용				
⑥ 복무구분	<input type="checkbox"/>	⑦ 계 급		
⑧ 산업 받고자 하는 복무기간	. . . ~			
⑨ 감축기간	. .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input type="checkbox"/> 직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쓰지 마십시오.

1. ①란은 현재직중인 연금취급기관 및 단위기관명을 쓰십시오.
2. ②·③란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④란은 현재직중인 연금취급기관의 임용일자를 반드시 쓰십시오.
3. ⑥란은 복무구분을 쓰고, □안에는 아래 해당 번호를 쓰십시오.
 1. 현역병 2. 일반하사 3. 방위병 4. 전투경찰 5. 교정시설경비교도 6. 상근예비역
 7.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8. 특례보충역 9. 자연계교원 10. 특수전문요원
 11. 교보제대자 12. 학보제대자 13. 기타

※ 산입하여서는 안되는 사항

비 대 상 기 간 등	비 고
○과거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에 기산입된 사병 복무기간 ○과거 공무원 경력중의 입대휴직기간 ○장기하사 이상, 장교 복무기간으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공익법무관	·합산신청대상임
○공중보건의사	·1992년 6월 이후 기간은 합산대상임
○공무원채직중의 입대휴직기간	·입대휴직 소급급여금 납부
○특례보충역의 실무종사기간 ○학군무관후보생(R.N.T.C) 교육기간 및 실무종사기간 ○국토건설단의 복무기간 ○장기하사임용, 장교입관 전의 후보생 교육기간 ○공익근무요원중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 수행기간 ○실역미필 보충역 ○방위병으로 6월 미만 복무자 ○그 밖의 산입 비대상 복무기간	

4. ⑧란은 입영연월일과 전역연월일을 쓰십시오.
5. ⑨란의 감축기간은 군복무중의 사고기간(형의 집행기간, 영창기간, 복무이탈기간)을 쓰십시오.
6. <행정정보이용 동의서>는 사무처리와 관련한 귀하의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 및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위의 서류(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의 서류를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용전 군복무 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